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통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귀하가 한화저축은행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 요구한 건에 대해 수락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1. 통지 대상 고객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통지내용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수락/거절수락/거절 (필수 기재)
거절사유	거절시 기재 (필수 기재)
거절 사유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	정당한 사유 기재 및 그 근거 (필수 기재)

3. 설명의무(법 제19조)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증빙자료 및 참고 자료	(필수)
--------------	------

◆ 당사는 귀하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